

## 교원트랙전환에관한규정

2018.06.22.제정    2018.07.01.일부개정    2018.07.01.일부개정    2022.11.21.일부개정  
2023.09.26.일부개정

<교무팀>

**제1조(목적)** 본 규정은 동명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 교원인사규정 제2조 2항에 규정된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을 재직 중 역량이나 실적이 탁월하다고 인정하여 정년트랙으로 전환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자격)** ① 트랙전환 대상자는 신규 임용된 후 5년 이상을 재직한 자로 교육, 연구, 산학협력 등에서 우수한 실적을 달성하거나 대학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.

② 트랙전환 임용 신청자는 다음 각 호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 (개정 2022.11.21., 2023.09.26.)

1. 박사학위 소지자(예체능계는 예외)
2. 최근 4년 이내 한국연구재단 등재(후보)지 이상에 400%이상의 논문게재 실적(교원업적평가규정 제16조제2항에 의함)
3. 교육 및 연구업적 평균점수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
  - 가. 기간제교원 : 최근 4년간 조교수(외국인) 및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제외한 전임교원 정기업적평가에서 교육업적 상위 50%와 연구업적 상위 50% 이내
  - 나. 산학협력중점교수 : 최근 4년간 조교수(외국인)를 제외한 전임교원 강의평가 학기별 순위 기준 평균 상위 40% 이내

**제3조(절차)** ① 총장은 매년 트랙전환에 대한 분야, 인원, 자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고 시행하여야 한다. (개정 2023.09.26.)

② 확정된 계획은 공개하여 관련자에게 신청의 기회를 공정하게 주어야 한다.

③ 제2조의 자격을 갖추어 트랙전환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과(부)장에게 제출한다.

④ 해당 학과(부)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뒤 정년트랙 전임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한다.

⑤ (삭제 2022.11.21.)

⑥ 최종 평가결과를 근거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. (개정 2022.11.21.)

**제4조** 삭제 <2022.11.21.>

**제4조의2(평가방법)** ① 평가는 개인업적평가, 트랙전환임용심사위원회평가, 학과(부)평가, 총장평가로 구성하며, 평가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따로 정한다.

② 학과(부)평가는 신청자 소속 학과(부)의 정년트랙 전임교원이 해당학과(부) 신청자에 대하여 평가하며, 학부교양대학 소속 신청교원은 평가방법을 따로 정한다.

③ 교무처장은 신청자의 교육, 연구, 봉사, 산학협력, 학과지표와 관련한 최근 **4년간**의 자료를 취합하여 트랙전환임용심사위원회와 신청자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. (**개정 2023.09.26.**)

[본조 신설 2022.11.21.]

**제4조의3(트랙전환임용심사위원회 구성)** ① 트랙전환임용심사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는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처장, 산학협력단장, 신청자의 소속 대학 학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부서장 등을 출석시켜 진술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[본조 신설 2022.11.21.]

**제5조(직접 신청)** ① 트랙전환을 희망하는 교원이 제2조의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학과(부)의 추천을 받지 못하거나 추천할 학과(부)가 불분명한 경우 심사위원회에 직접 신청을 할 수 있다.

② 심사위원 2/3 이상이 제1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당해교원을 트랙전환 심사에 포함할 수 있다.

**제6조(준용)**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, 전임교원신규임용규정 등을 준용하며 기타 사항은 총장의 결정에 따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침폐지)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교원트랙전환임용 신청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지침은 폐지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



[별지 제2호 서식]

## 트랙전환 학과(부)장 추천서

소 속		성 명	
생년월일		본대학교 임용일자	

위 교원은 재직기간 중 학과(부)와 대학발전에 현저히 기여하였기에  
정년트랙전임교원 전환대상자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, 학과 전임교원  
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합니다.

학과	직위	성명	찬성여부	비고

20    년    월    일

\_\_\_\_\_학과(부) 학과(부)장 \_\_\_\_\_(서명)